

이천시 주·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차량등록과

제정 2026· 4· 17 조례 제237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소속 주·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착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제복”이란 주·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 근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과 부속물을 말한다.
2. “주·정차 단속 담당공무원(이하 “단속담당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이란 주·정차를 단속하는 이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.

제3조(제복의 종류) 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.

1. 근무복 : 하복, 춘추복, 동복
2. 부속물 : 모자, 휘장 등

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착용수칙) ① 단속담당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.

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,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
제5조(착용기준)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주·정차 단속 근무 시 착용하되 제복의 착용기간은 제6조에 따른다.

제6조(제복의 착용기간) ① 제복은 하계·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. 단, 하복의 경우 계절의 구별 없이 착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하계 : 6월 1일부터 ~ 8월 31일까지
2. 동계 : 11월 1일부터 ~ 다음 해 3월 31일까지

이천시 주·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

3. 춘추계 : 4월 1일부터 ~ 5월 31일까지, 9월 1일부터 ~ 10월 31일까지

③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여건에 따라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지급기준)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지급된 제복은 이 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제복을 만드는 방식(제3조 제2항 관련)

1) 근무복 - 하복

구 분	상 의	하 의
색 상	회색	검정색
세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타이식 옷깃 형태의 통풍이 잘되는 소재로 한다. - 반팔소매로 한다. - 좌측 가슴 주머니가 있는 형태로 한다. - 좌측 팔에는 이천시 로고 휘장을 부착한다. - 우측 팔에는 주차지도 휘장을 부착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긴바지 형태의 통풍이 잘되는 소재로 한다. - 전면 우측과 좌측에 주머니가 있는 형태로 한다. - 뒤편 좌·우측 양 주머니가 있고 주머니 단추가 있는 형태로 한다.

2) 근무복 - 춘추복

구 분	상 의	하 의
색 상	회색	검정색
세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타이식 옷깃 형태로 한다. - 긴팔소매로 한다. - 좌측 가슴 주머니가 있는 형태로 한다. - 좌측 팔에는 이천시 로고 휘장을 부착한다. - 우측 팔에는 주차지도 휘장을 부착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긴바지 형태로 한다. - 전면 우측과 좌측에 주머니가 있는 형태로 한다. - 뒤편 좌·우측 양 주머니가 있고 주머니 단추가 있는 형태로 한다.

3) 근무복 - 춘추복(점퍼 상의)

색 상	검정색
세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적인 바람막이 형태의 점퍼로써 앞 중심에 지퍼가 있는 형태로 한다. - 좌측 팔에는 이천시 로고 휘장을 부착한다. - 우측 팔에는 주차지도 휘장을 부착한다.

4) 근무복 - 동복

구 분	상 의	하 의
색 상	회색	검정색
세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타이식 옷깃 형태로 한다. - 긴팔소매로 한다. - 좌측 가슴 주머니가 있는 형태로 한다. - 좌측 팔에는 이천시 로고 휘장을 부착한다. - 우측 팔에는 주차지도 휘장을 부착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긴바지 형태의 통풍이 잘되는 소재로 한다. - 전면 우측과 좌측에 주머니가 있는 형태로 한다. - 뒤편 좌·우측 양 주머니가 있고 주머니 단추가 있는 형태로 한다.

5) 근무복 - 동복(방한복 상의)

색 상	검정색
세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릎 위까지 길이의 두터운 방한점퍼로써 앞 중심에 지퍼가 있는 형태로 한다. - 좌측 팔에는 이천시 로고 휘장을 부착한다. - 우측 팔에는 주차지도 휘장을 부착한다.

6) 부속물

구 분	세 부
모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자의 천정은 타원형으로 하고, 둘레에 지름 5밀리미터의 둥근 비닐망사로 된 줄을 넣는다 - 모자 차양은 반월형으로 하며, 정중앙에 이천시 로고를 새겨 넣는다 - 하복 착용기간의 모자의 경우 통풍이 잘되는 소재로 제작한다.
이 름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플라스틱 재질의 흰색바탕의 형태로 하며, 검은색으로 “소속기관명”을 표기하고 그 하단에는 “성명”을 표기한다. - 모든 제복 왼쪽가슴에 이름표를 부착하고, 크기는 가로 8cm, 세로 2.5cm로 한다.
휘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천시 로고 휘장 : 타원형 모양의 휘장에 흰색 바탕으로 하며, 이천시 대표 로고를 중앙에 새겨 넣는다. (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표 3) - 주차지도 휘장 : 타원형 모양의 휘장에 흰색을 바탕으로 하며, ‘주차지도’ 문구를 위에 새겨넣고 ‘이천시’ 문구를 아래에 새겨넣는다.

[별표 2]

제복의 지급기준(제7조 관련)

□ 단속공무원 대상

제복형태	제 복 내 용		수량	지급기간	비 고
	구 분	품 명			
근무복	하복	상 의	3벌	1년	
		하 의	2벌	1년	
	춘추복	상 의	2벌	2년	
		하 의	2벌	2년	
		점 퍼	1벌	2년	
	동 복	상 의	2벌	2년	
		하 의	2벌	2년	
		방한복	1벌	2년	
	기 타	모자(일반)	1착	2년	
		모자(하복)	1착	2년	